#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67

발의연월일: 2020. 8. 31.

발 의 자: 문진석·조오섭·서영석

최강욱・이소영・송갑석

인재근 • 이상헌 • 조응천

안민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광역시 지역 군의 대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 하지 않고 있으며, 세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출 용도를 달리 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 이외의 용도로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과징금과 과태료 규정은 장기간 현행 부과 기준을 유지해오고 있거나 위반 중요도에따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따라 광역시 지역의 군에 대한 명확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세출 규정을 정하고, 과 징금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은 물론, 과태료의 부과 기준 을 위반 중요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제24조, 제30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군수(광역시 지역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광역시 지역의 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 ④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주차환경개선 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 ⑤ 제4항제2호의 주차질서유지사업은 집중 단속구역, 단속주기 및 방법, 인력수급계획 및 홍보 및 계도 등에 관한 주차단속계획을 운 용·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 2.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 대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 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 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안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치 등) ① (생략) 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 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 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군수(광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 역시 지역의 군수는 제외한다.) 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 성한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u>이</u> 설 │ ③ -----<u>구청장·광역시</u> 지역의 군수가 -----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 다. 1. 주차환경개선 사업 :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 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 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 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질 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 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u>⑤</u>~ <u>⑦</u> (생 략)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 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 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 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5. (생략)

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
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
화를 위한 사업
⑤ 제4항제2호의 주차질서유지
사업은 집중 단속구역, 단속주
기 및 방법, 인력수급계획 및
홍보 및 계도 등에 관한 주차단
속계획을 운용·관리계획에 포
함하여야 한다.
<u>⑥</u> 특별회계
⑦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7
<u>U</u> - <u>a</u> (28 MJ8+1 M1
항까지와 같음)
<del>_</del> _
항까지와 같음)
항까지와 같음) 제24조(영업정지 등)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 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의 이용을 거절한 자
  - 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 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 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 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 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 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 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 하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 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 한 자
  - 5의2.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100만원--
-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
-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 | 2.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 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 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 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 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 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 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 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7.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u><신 설></u>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 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 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 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

	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
	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
	지 아니한 자_
	3.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u>④</u> (현행과 제3항과 같음)